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남부순환로(개봉1동사거리주변)평탄화공사]

□ 점검일시 : 2019.06.17 (월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한종수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오류IC에 설치된 세륜기는 수조 주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(울타리의 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오류IC 통로에 놓여진 토류판은 정리정돈을 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위험물 보관소를 인양 시 PP로프 사용을 금지하며 2줄 4점 걸기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바람.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4(위험물 보관소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오류IC에 설치한 세류기는 분전반에 충전부가 노출된 차단기가 있어 감전위험이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·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


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- 경사지에 적치한 거푸집은 전도위험이 있으니 평지로 이동 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소화기는 장소에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화재 초기진압에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고,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부착 관리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4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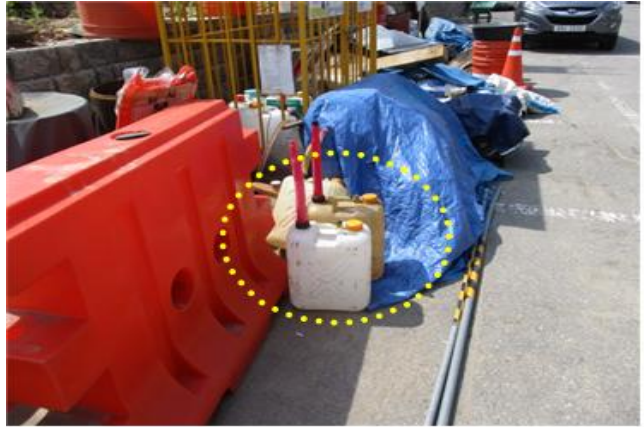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내 반입된 위험물 보관소에는 위험물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기 바람, 외부에 방치된 경유 등은 위험물 보관소에 보관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4(위험물 보관소)

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에 반입된 팔레트 등은 즉시 반출하기 바라며, 목재는 화재 위험이 있으니 도로변에서 이격하여 적재하거나 부득이하게 도로 옆에 적치 시 방염포 등을 덮어 관리하기 바람.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오류IC 공사장 입구는 시건장치를 사용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 바람, 공사장 주변 PP로 프로 경계를 구분한 곳은 근로자 외 일반인 출입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도록 통제 시설을 보완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

